

체육교습업 전면 시행



Q 체육교습업이 무엇인가요?

A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**13세 미만 어린이**를 대상으로 **30일 이상**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.(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Q 무엇이 달라졌나요?

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



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이 신설되었습니다.
(체육시설법 제10조)

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 필수 (2021.11.19까지)



9개 종목의 체육교습업에 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※ 기존 체육시설업종으로 등록 신고한 경우 별도신고 필요 없음(체육시설법 제20조의2)

통학버스 관련 안전조치 사항 적용



통학버스 운영 시, 좌석안전띠 필수 착용, 통학버스 내 보호자 동승 및 승·하차 지도 등의 **안전조치를 필수로 실시**해야 합니다.
(도로교통법 제53조)

체육교습업 종목

9개 대상종목



농구



롤러스케이팅
(인라인롤러, 인라인스케이팅 포함)



배드민턴



빙상



수영



야구



줄넘기



축구



위의 8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

Q 운영자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 (2020.12.22 시행)

A

준수사항

-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체육교습을 해서는 안됩니다.(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)
-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됩니다.(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)

시설기준

- 해당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.(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)
※ 빙상과 수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및 제23조 안전·위생기준이 준수되는 **시설에서만 교습해야 합니다.**
-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.(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)

안전·위생기준

-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(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)
- 운동 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.(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)

체육지도자 배치기준(2023.1.1 시행)

체육지도자는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일 때 1명 이상, 30명 초과일 때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, 주된 운동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.(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)